

제12장 투명성

제12.1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란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여 일반적 또는 추상적 행위, 절차, 해석 또는 그 밖의 요건을 말한다. 이는 특정인에 적용되는 판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그리고

이해관계인이란 제12.2조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따라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제12.2조 목적 및 적용범위

당사국 각국의 규제 환경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경제운영자, 특히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소규모 경제운영자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추구한다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상의 그들 각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,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,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투명성, 협의 및 더 나은 운영을 위한 명확화와 개선된 규정을 이에 규정한다.

제12.3조 공표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

로 적용되는 조치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한다.

- 가. 비차별적인 방식으로,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하여,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,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,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될 것
- 나. 그러한 조치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, 그리고
- 다. 법적 안정성, 정당한 기대 및 비례성의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면서, 조치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

2. 각 당사국은

- 가. 제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,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노력한다.
- 나. 이해관계인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, 그러한 기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. 그리고
- 다.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.

제12.4조 질의처 및 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제안되거나 발효 중인 것으로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그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 질의는 이 협정상 수립되는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통하여,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.

2.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제1항에 규정된 응답은 최종적이거나 법적으로 구속적이지 아니하며 오직 정보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.

3.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, 요청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관련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,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.

4.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임무를 가진 그 이해관계인을 위한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확인하거나 창설하기 위해 노력한다. 그러한 과정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, 시간을 준수하며, 결과 지향적이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. 그러한 과정은 당사국이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상소 또는 재심 절차를 저해하지 아니한다. 그러한 과정은 또한 제14장(분쟁해결) 및 부속서 14-가(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)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.

제12.5조

행정절차

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, 공평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함에 있어,

- 가. 절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에게,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,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,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나. 시간, 절차의 성격, 그리고 공공이익이 허용하는 한, 그러한 이해관계인에게 최종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다. 그리고
- 다. 자국의 절차가 자국의 법에 근거하고, 이에 따르도록 보장한다.

제12.6조 재심 및 상소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,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,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,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, 사안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.
2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.
 - 가.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, 그리고
 - 나. 증거와 기록 제출자료,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,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근거한 결정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규정된 상소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.

제12.7조 규제의 질 및 성과와 모범 행정 행위

1. 양 당사국은 각국의 규제 개혁 과정과 규제 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, 규제의 질과 성과를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2. 양 당사국은 모범 행정 행위의 원칙에 동의하고, 정보와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, 그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
제12.8조

비차별

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인이나, 제3국의 이해관계인, 또는 제3국에 부여되는 투명성 기준 중 최선의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투명성 기준을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한다.